Q **유통업체 등을 통해 수매한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(근거)가 무엇 인가요?**

A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1항에 따르면 “한약재의 국내 생산기반 및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국내생산 재배자(국내생산 한약재 재배자로부터 한약재 판매를 위탁받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3조 제3호 및 4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포함)로부터 구매한 실적”만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으로 인정됩니다.

예를 들면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, 협동조합, 농업인으로부터 수매한 실적은 인정되며, ○○물산, ○○유통, ○○제조업소, ○○제약, ○○도매시장 등에서 수매한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.

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이 필요하며, 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농업인의 경우에는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수량 및 자필 서명, 도장이 들어간 거래확인서)와 농업경영체등록증이 필요합니다.

Q **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신청량과 국산 수매실적에 따라 배정량이 달라지나요?**

A 네 그렇습니다. 신청량과 국산 수매실적이 연동됨에 따라 배정량이 달라집니다. 여기서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국산 수매실적과 이에 따른 구간값이 적용이 됩니다. 다음은 신청량에 따른 배정량이 달라지는 예시입니다.

구분	요청량 (a)	국산한약재 수매량	인정 수매량 (수매량×1.5)	국산한약재 수매실적 (b)	수입이행 실적비율 ©	수입 배정량 (d=(a*b)*c)
1신청업체	15,000	10,000	15,000	1.0	100%	15,000
	31,000	10,000	15,000	0.4	100%	12,400
	160,000	10,000	15,000	0	100%	0

전년도 해당품목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: 100% 이상은 “1”, 100% 미만~90%까지 품목별 배정요청량의 “0.9”, 90% 미만~80%까지 “0.8”, 80% 미만~70%까지 “0.7”, 70% 미만~60%까지 “0.6”, 60% 미만~50%까지 “0.5”, 50% 미만~40%까지 “0.4”, 40% 미만~30%까지 “0.3”, 30% 미만~20%까지 “0.2”, 20% 미만~10%까지 “0.1”, 10% 미만은 “0”

이와 같이 수입 배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산 한약재 수매실적을 고려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.

Q 잔여량에 대한 수입신청은 지난 12월에 배정된 업체도 신청이 가능하나요?

A 네 가능합니다. 다만, 기존에 인정된 국산 한약재 수매실적은 불인정되오니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1차 배정 업체 중 배정받은 물량보다 국산 수매실적(수매량×1.5배)이 많은 경우, 인정분에 한하여 추가로 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(배정가능 물량 확인은 e-mail 문의 : supply@nikom.or.kr)

또한, 기존 공고와 마찬가지로 수입 배정량은 배정기준을 준수하여 배정합니다. 한약재 수입 잔여량에 대해서는 신청업체 선착순으로 배정하고 잔여물량 소진시까지 공고를 진행합니다.

한국한의약진흥원은 수급조절품목 한약재의 공정하고 투명한 배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